

KERI Brief

독일 가업상속공제제도의 동향과 시사점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dwlim@keri.org)

가업상속공제는 원활한 가업승계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취지의 제도이지만, 공제한도나 요건 완화를 위한 세법개정 때마다 과세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으로 개정안이 무산되어 효율적인 제도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제도의 실적은 한정된 적용대상과 엄격한 적용요건 등으로 인하여 연평균 60건이 조금 넘는 저조한 상황인데, 2017년 세법개정안은 공제한도의 가업 영위기간 조정, 중견기업의 상속세 납부요건 신설 등을 포함하고 있어 가업상속공제의 적용이 더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독일 가업상속공제제도는 2014년 말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2016년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가업상속공제보다 적용요건 및 사후관리요건이 엄격하지 않은 상황이다. 독일의 제도 강화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가업상속공제가 독일보다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나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을 말하는 것이다. 독일 가업상속공제의 동향과 우리나라 가업상속공제의 입법목적에 고려할 때 상속기업 및 일자리의 보존이라는 사회적 이익의 실현에 중점을

두고, 제도의 적용대상 확대와 고용유지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제도의 입법목적이 기업의 존속 및 일자리 유지를 통해 세금감면액 이상을 국가 경제성장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공제대상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보다 확대하는 것이 국가경제 측면에서 더 효과적일 것이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도 대규모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의 필요성을 인정함과 동시에 필요성 심사를 그 요건으로 판시하였으므로, 전체 중견기업에 필요성 심사를 해서 상속세로 인해 존속이 어려운 기업에 한정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한다면 제도의 목적에 부합할 것이다. 다만, 중견기업의 경우 과세형평 측면에서 타당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른 적용대상보다 고용유지 요건을 강화해서 일자리 창출이라는 공공복리를 실현하여야 할 것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자산에 대해 국제적으로 가장 높은 상속세율(65%)은 기업경영에 장애 요인이 되는 만큼, 상속세는 중소기업의 활성화 및 대기업으로의 성장이라는 기업순환을 위해서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며, 국제적 추세에 부합하는 방향일 것이다.

1. 검토배경

□ **가업상속공제는 원활한 가업승계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취지의 제도이지만, 매년 세법개정 시 과세형평 측면에서 논란이 되고 있음**

○ 해당 제도의 도입목적은 기업의 기술·경연노하우의 효율적인 활용 및 전수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임¹⁾

- 고용창출 등을 통한 경제활성화, 중소기업의 연속성 지원, 장수기업 만들기를 통한 세계적인 강소기업 육성이 구체적인 목적일 것임

○ 그러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공제한도나 요건 완화를 위한 세법개정 때마다 과세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어 효율적인 제도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

- 해당 제도의 실적은 연평균 60건이 조금 넘는 수준의 저조한 상황이고, 2016년 중견기업 실태조사에서는 상속·증여세의 부담, 엄격한 가업승계요건 때문에 중견기업의 78.2%는 가업승계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²⁾

-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들이 국회에 제출될 때마다 부자감세라는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수정되거나 폐기되어 왔음

○ 2017년 세법개정안은 공제한도의 가업 영위기간 조정, 중견기업의 경우 상속세 납부요건 신설 등을 포함하고 있어 가업상속공제의 적용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됨

□ **한편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014년 12월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적용대상과 공제 방법 등에서 헌법과 불합치한다고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2016년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음**

○ 가업상속공제제도 자체는 회사 승계기간 동안 일 자리의 보존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합헌이 인정되었음

- 사업과 관련 없는 자산에 대해서 상속세를 면제해주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고, 대규모기업의 제도 적용 및 소규모기업의 행정적 특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음

○ 판결에 따라 가업상속공제제도가 축소되었으나, 축소된 제도조차도 우리나라 가업상속공제제도보다 요건이 엄격하지 않은 점은 입법적 시사점을 줄 수 있음

□ **높은 상속세율과 제한된 가업상속공제제도 하에서는 기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고용을 창출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이 필요**

○ 이에 본 연구는 우선 해당 제도의 내용과 현황을 살펴보고, 독일 가업상속공제제도의 동향을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향후 개선과제를 제안하려 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법률 제8828호, 2007.12.31.,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참조

2) 중소기업청·한국중견기업연합회, 「2016 중견기업 실태조사」, 2017.1., 34쪽

II. 우리나라 가업상속공제제도의 개요

1. 제도 내용 및 현황

□ '가업상속공제'란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요건 및 가업의 범위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면 상속세 과세 가액에서 가업상속재산가액을 공제하는 제도임

○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최대 500억 원³⁾까지 상속공제를 하여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주는 제도임⁴⁾

- <표 1>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가업상속공제 가능

○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표 2>의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게 되면 기간별 추징률⁵⁾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함

- 3) 10년 이상: 200억 원, 15년 이상: 300억 원, 20년 이상: 500억 원
-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
- 5) 기간별 추징률은 다음과 같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11항)

기 간	추징률
7년 미만	100%
7년 이상 8년 미만	90%
8년 이상 9년 미만	80%
9년 이상 10년 미만	70%

<표 1> 가업상속공제 적용 요건

요 건	기 준	상세 내용
가업	계속경영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
	중소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 상증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 조특령 §2① 1, 3호 요건(중소기업기본법상 매출액, 독립성 기준)을 충족 - 자산총액 5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 상증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 조특령 §9④ 1, 3호 요건(중견기업특별법 시행령 §2②/독립성 기준)을 충족 - 상속개시일 직전 3개 과세기간(사업연도) 매출액의 평균금액 3천억 원 미만
피상속인	주식보유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분 50%(상장법인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
	대표이사재직요건 (1가지 충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업 영위기간의 50% 이상 재직 • 10년 이상의 기간 •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상속인	나 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세 이상
	가업종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
	취임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기한까지 임원취임 및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가 요건 충족 시 상속인요건 충족으로 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정리

<p>□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실적은 한정된 적용대상과 엄격한 적용요건 등으로 인하여 연평균 60건이 조금 넘는 수준의 저조한 상황임⁶⁾</p> <p>○ 가업상속공제제도가 가장 활성화된 독일은 연평균 1만 7천 건이 넘고,⁷⁾ 연평균 공제금액도 434억 유로(한화 약 56조 3천억 원⁸⁾)에 달함</p> <p>- 중소기업(Mittelstand)이 대다수를 차지하는⁹⁾ 독일은 국가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상속 기업의 존속과 일자리 유지라는 사회적 이익 실현에 가업상속공제를 사용하고 있음</p> <p>○ 우리나라도 상속기업의 존속과 일자리 보존이라는 사회적 이익의 실현에 중점을 두고, 가업상속 공제</p>	<p>제도를 확대 또는 완화하여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있음</p> <p>6) 2016년 중견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업승계계획이 없는 이유로 복잡한 지분구조, 엄격한 가업승계 요건, 가업승계 정보 부족 등을 들고 있음. 가업승계 요건 중 적용대상 제한, 10년 이상 가업영위기간, 지분 50%(상장법인 30%) 10년 이상 보유 등이 다른 국가에 비해 엄격함(중소기업청·한국중견기업연합회, 「2016 중견기업 실태조사」, 2017.1., 188쪽)</p> <p>7) 2014년 기준으로 중소기업의 수는 독일이 약 248만 개, 한국은 약 344만 개 정도로 기업의 수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가업상속공제의 이용실적이 크게 저조함. 참고로 제조업의 중소기업 수는 독일이 207,054개, 한국이 123,661개임(중소기업중앙회, 「2016 해외 주요국 중소기업 통계」, 2016.12.)</p> <p>8) 1유로 = 1,297.7원(2017년 11월 3일 기준)</p> <p>9) 전체기업 중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기업 수 99.6%, 고용 58.5%, 매출 35.3%에 달함(독일연방경제부 홈페이지 참조, http://www.bmw.de/, 2017.10.20. 방문)</p>
--	---

〈표 2〉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

구 분	사후관리요건 위반사유
가업상속공제	① 해당 가업 자산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②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
	③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된 경우
	④ 매년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이 기준 고용인원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⑤ 상속이 개시된 후 10년 후에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20%)에 미달하는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5항 정리

〈표 3〉 가업상속공제 결정현황

(단위: 백만 원, 1,000 유로)

구 분	한 국		독 일	
	건수	공제금액	건수	공제금액
2011	46	32,508	12,546	20,023,301
2012	58	34,345	13,519	40,167,842
2013	70	93,307	17,200	34,082,533
2014	68	98,608	20,955	66,025,261
2015	67	170,593	24,006	56,780,667
평 균	62	85,872	17,645	43,415,921

* 자료: 2016년 국세통계 연보, Finanzen und Steuern(Erbchaft- und Schenkungsteuer) 2011~2015

2. 2017년 세법개정안

□ 2017년 세법개정안은 소득재분배 개선을 위한 고 소득층에 대한 과세 강화의 일환으로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요건을 강화함¹⁰⁾

- (공제요건 추가) 중견기업의 경우 '상속세 납부능력 요건' 추가(2019년 시행)
 - 가업상속인이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능력이 있을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배제
 - '상속세 납부능력이 있는 경우'란 가업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이 해당 가업상속인이 부담하는 상속세액의 1.5배보다 큰 경우를 말함
- (공제한도 조정) 가업영위기간별 공제한도를 조정

□ 상속세 최고세율이 높은 상황¹¹⁾ 및 기업 연속성과 종사근로자 고용안정 측면에서 가업상속공제제도 요건 강화는 부정적 악영향이 있을 것이므로 재고할 필요

- 정부는 장수기업 중심으로 가업승계 세제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제한도의 가업영위기간을 연장하였다고 설명하였지만, 사실상 공제한도의 축소로 보임
 -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여 가업승계를 준비했던 기업에게는 큰 피해를 줄 수도 있음
- 개정안의 세부담 증가는 사례를 통해 예상해 볼 수 있음(표 5) 참조
 - 20년 경영한 중소기업으로 가업상속재산 600억 원, 상속인은 자녀 1명, 가업상속공제와 일괄공제만 있는 경우
 - 개정 전후를 비교해보면 95억 8,580만 원의 추가적인 상속세를 부담하게 됨

10) 기획재정부, "2017년 세법개정안", 2017.8.2

11) 주요국 상속세 최고세율(%): (한국)50, (일본)55, (미국)40, (독일)30, (OECD평균)26

〈표 4〉 가업영위기간별 공제한도

현행		→	개정안	
가업영위기간	공제한도		가업영위기간	공제한도
10년 이상	200억 원		10년 이상	200억 원
15년 이상	300억 원		20년 이상	300억 원
20년 이상	500억 원		30년 이상	500억 원

〈표 5〉 가업상속 사례 비교

구분	현행	개정안(2018년 시행)
상속재산가액	600억 원	600억 원
가업상속공제액	500억 원	300억 원
일괄공제	5억 원	5억 원
상속세 과세표준	95억 원	295억 원
세율	50% (누진공제 4.6억 원)	50% (누진공제 4.6억 원)
산출세액	42.9억 원	142.9억 원
신고세액공제	3.003억 원	7.145억 원*
자진납부세액	39.897억 원	135.755억 원

* 2017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상속세 신고세액공제도 축소 예정임(현행 7% → '18년 5% → '19년 이후 3%)

III. 독일 기업상속공제제도의 동향 및 시사점

1. 독일 기업상속공제의 연혁 및 개요

□ 독일은 1997년부터 기업상속공제를 적용하였으며, 2008년 상속세 개혁법률¹²⁾에 의해 크게 완화 및 확대되어 적용되어 오다가 2014년 말 연방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2016년 말 개정되었음

○ 특히 2008년 사업자산에 대한 공제율을 상속세 개혁법에 따라 35%에서 85% 및 100%로 확대하였는데, 이것은 유럽 여러 국가에서 상속세를 폐지하는 추세 가운데 이를 폐지하는 대신 상속세를 합리화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판단됨

□ 2016년 말 개정 전 독일의 기업상속공제제도는 다음과 같음

○ 기업상속적용대상은 모든 기업이지만, 임대·투자 자산 등 관리자산(비사업용자산)이 50% 이상인 기업은 제외됨

- 비사업용자산이 10% 이상인 기업은 85% 공제만 가능함

○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에게는 별다른 요건이 없고, 다만, 지분율 요건으로 피상속인 및 조합원의 총 지분율이 25% 이상이어야 함

○ 기업상속공제의 공제금액은 기업상속재산의 85% 또는 100%이고, 그 한도는 없음

○ 사후관리 기간은 5년(85% 공제), 7년(100% 공제)이고, 그 기간 동안 기업, 기업재산, 지분 및 고용을 유지하여야 함

- 사후관리 요건 중 고용유지요건은 85% 공제는 5년간 총급여 400%, 100% 공제는 7년간 총급여 700% 이상 유지하여야 함

- 사후관리 기간 내에 요건 불충족 시 기간에 비례하여 추징함

□ 2014년 12월 17일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기업상속공제제도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고,¹³⁾ 판결에 따라 독일 연방의회는 다음과 같은 개정안을 2016년 11월 4일 채택하였고, 개정 법령은 2016년 7월 1일자로 소급 시행하였음¹⁴⁾

12) '상속세법 및 평가법의 개혁에 관한 법률'(Gesetz zur Reform des Erbschaftsteuer- und Bewertungsrechts'), 2008.12.24. 제정되고 2009.1.1.부터 시행됨

13) 결정 요지는 다음과 같음[BVerfG(Bundesverfassungsgericht), 2014.12.17., 1 BvL 21/12]

(1) 상속 및 증여세법 제13a조 및 제13b조에 의거 승계 이전하는 기업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기본법 제3조제1항에 위반되지 않지만, 구체적인 공제 규모와 공제 방법들은 부분적으로 기본법 제3조제1항에 위반됨. 현행법은 새로운 규정이 제정될 때까지 적용되지만, 입법자는 2016년 6월 30일까지 새 규정을 제정할 의무를 짐

(2) 기업 존속을 보장하고, 이로써 일자리를 보존하기 위하여, 개인적인 책임 하에 경영하는 중소기업에 기업들에게 상속세를 완전히 면제해 주는 것은 입법자의 결정재량에 속함. 그러나 입법자는 조세감면을 위해서 적절한 정당화 사유를 필요로 함. 기업의 존속과 일자리가 세금과 관련된 유동성 문제로 인해 위협받지 않도록 생산적인 재산에 조세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목표설정의 정당성에는 헌법상 의심의 여지가 없음

(3) 상속세 공제가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어떠한 공제의 필요성 심사도 없이 대규모기업에까지 제공된다면, 기업재산에 대한 무상 취득 혜택 부여는 비례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됨.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없이 세금을 감면하면 조세의 평등에 어긋나게 되므로, 기업 규모를 규정하는 정밀하고 알기 쉬운 기준을 마련하여 필요성 심사를 거치지 않은 공제가 더 이상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입법자의 과제임

(4) 급여총액규정은 기본적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지만, 총임원 20명 이하를 고용한 중소기업에게 급여총액규정의 적용을 면제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됨. 원칙과 예외의 관계에서 보았을 때, 입법자가 원칙적으로는 과세를 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만 세금 부담을 줄이려 한 결정이 실질적으로는 반대로 작용하여 대부분의 기업(연방재정법원의 설명에 따르면 독일 내 90% 이상의 기업이 20명 미만의 피고용인이 있는 기업임)이 감세혜택을 받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세금을 내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 것임

14) 독일 연방법 홈페이지 참조(<https://www.buzer.de/gesetz/12228/a201468.htm>, 2017.10.20. 방문). 15명 이하 시 총급여의 565% 이상 요건을 만족해야 하며, 총임원 수가 5명 이하인 경우 요건 적용을 배제함[ErbStG §13a (3), (10)]

- (대규모기업 상속세 공제 제한) 2천 6백만 유로(한화 약 337억 원) 이상의 자산 상속 시 공제를 받으려면 공제필요성 검토 절차를 밟아야 하고, 공제제도가 제한 운영됨¹⁵⁾
 - 세금과 관련된 유동성 문제로 인해 기업의 존속 등이 위협받는 경우에만 가업상속공제를 제공하며, 대상 기업이 비상업용 자산 등으로 상속세 납부가 어렵다는 것을 증명해야 함¹⁶⁾
- (급여총액유지 규정 개정) 전면적인 면제는 5명 이하인 사업체로 축소하고, 20명 이하의 경우에도 적용 요건이 세분화됨¹⁷⁾
- (기업재산과 관리자자산의 개념 재정립) 관리자자산(비사업용 자산)의 범위를 확대하고, 자산의 사업관련성 요건을 강화함¹⁸⁾¹⁹⁾
 - 비상업용 자산에 대한 범위가 예술작품 및 수집품, 도서관, 주화, 귀금속, 빈티지 자동차, 요트 등과 같이 사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자산으로 확대됨

2. 입법적 시사점

- **독일의 가업상속공제제도는 관련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2016년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가업상속공제보다 적용요건 및 사후관리요건이 엄격하지 않은 상황임**
 - 피상속인의 10년 이상 가업영위나 상속인의 가업종사·대표자 취임 등은 독일의 제도상 요건이 아니며, 피상속인의 지분율도 우리나라의 50%(상장기업은 30%)에 비해 독일은 25%로 엄격하지 않음
 - 자산 2,600만 유로 이상 기업에게는 필요성 심사 및 공제를 축소를 통해 적용대상을 축소했지만, 우리나라도 적용대상이 매출액 3천억 원 미만의 중소기업·중견기업으로 제한되어 있음
 - 또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서는 중견기업에 대해 상

속세 납부능력 요건이라는 필요성 심사를 부여해서 독일 제도와 유사한 상태임

- 사후관리기간도 독일은 5년 또는 7년으로 우리나라의 10년에 비해 짧은 상황임
 - 고용유지 요건도 총급여 5년간 400% 또는 7년간 700%이고, 우리나라의 일자리수 10년 평균 100%(중견기업 120%)보다 기간 및 비율 측면에서 엄격하지 않음
- **연방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른 개정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가업상속공제의 요건이 독일보다 엄격하다는 사실은 우리나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함**
 - 독일의 가업상속공제제도의 동향과 관련 판결이 주는 입법적 시사점은 크게 입법 목적, 고용유지 요건, 대규모기업 적용 여부 등으로 볼 수 있음
 - (입법목적)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정당성이 의심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우리나라의 제도도 헌법상 정당성을 가질 수 있음

15) 독일 상속 및 증여세법(ErbStG) §13a (1)

16) 상속인은 85% 공제와 100% 공제를 선택할 수 있으나, 모든 경우 2천 6백만 유로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75만 유로당 1%씩 공제율이 감소하며, 100% 공제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최대 공제가능한 자산규모는 9천만 유로(한화 약 1,167억 원)임 [ErbStG §13c (1)]

17) (85% 공제, 5년간 400% 유지) 사업승계일 이후 5년간 총급여액이 6명 이상 10명 이하 시 총급여의 250% 이상, 11명 이상 15명 이하 시 총급여의 300% 이상 요건을 만족해야 하며 종업원 수가 5명 이하인 경우 요건 적용을 배제함. (100% 공제, 7년간 700% 유지) 사업승계일 이후 7년간 총급여액이 6명 이상 10명 이하 시 총급여의 500% 이상, 11명 이상 15명 이하 시 총급여의 565% 이상 요건을 만족해야 하며, 종업원 수가 5명 이하인 경우 요건 적용을 배제함[ErbStG §13a (3), (10)]

18) 85% 공제의 경우 (이전) 비상업용 자산의 장부가치 ≤ 사업용 자산의 장부가치 50% 이하 경우: 85% 공제, (개정) 비상업용 자산의 장부가치 ≤ 사업용 자산의 장부가치 10% 이하 경우 (2년 이하 보유자산의 경우 공제불가)

19) 100% 공제의 경우, (이전) 비상업용 자산 장부가치 ≤ 사업용 자산 장부가치 10% ⇒ (개정) 비상업용 자산 장부가치 ≤ 사업용 자산 시장가치 20%(ErbStG §13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결에 따르면 기업상속공제제도는 단순한 부(富)의 이전이 아니라 기업의 존속 및 일자리 유지라는 사회적 이익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헌법적 정당성을 지님 - 우리나라의 기업상속공제제도도 부자감세라는 누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세제혜택을 받는 반대급부를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이고, 기업의 존속과 일자리 유지라는 사회적 이익을 실현하여 국가경제에 기여한다는 반대급부를 강조하여 부자감세라는 부정적 인식을 해소시켜야 함 <p>○ (고용유지 요건) 독일이 일자리 유지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일자리 수'를 유지하는 대신 급여총액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해당 기업이 고용신축성을 갖도록 한 것임²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일자리 유지 또는 창출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현행 사후관리요건 중 '일자리 수' 유지보다는 더 신축적인 '급여총액' 유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기업 적용 여부) 연방헌법재판소는 기업상속공제제도가 대규모기업에도 필요하지만, 그 감면은 필요성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시함 - 판결에 따르면 대규모기업도 필요성 심사를 받으면 기업상속공제가 가능하다고 했는데,²¹⁾ 독일과 우리나라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제도 자체를 이용하지 못하게 개정 또는 운영하고 있으므로 타당하지 않음²²⁾
	<p>20) 해당 기업은 경제상황 또는 필요성에 따라 더 생산적이고 고임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도 있음</p> <p>21) 대규모기업도 재정적 어려움에 빠질 수 있고 투자나 일자리를 축소할 수도 있으므로 이로 인한 공공복리의 훼손 부담이 큰 측면에서 대규모기업에 대한 기업상속공제 필요성 인정. 다만, 대규모기업이 공제받을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도 상속세를 감면해주는 것은 헌법상 문제가 되므로 필요성 심사를 받아야 하며 이미 소유한 사적재산의 투입이 필요하다고 판시함</p> <p>22) 독일은 2천 6백만 유로 이상의 경우 필요성 심사 및 공제 축소를 규정하였고, 우리나라도 2017년 세법개정안에서 유사한 상속세 납부능력 요건을 도입하였음</p>

〈표 6〉 독일과 우리나라의 기업상속공제 비교

구분	우리나라	독일('16년 개정 전)	독일(현행)
요건	적용 대상	•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소·중견기업	• 모든 기업 (제외) 비사업용자산 50% 이상 기업
	가업 및 피상속인	〈가업영위기간〉 • 10년 이상 경영 • 기간 중 50% 이상 대표자 종사 〈지분율〉 특수관계인 포함 50% (상장 30%) 이상	〈가업영위기간〉 제한없음 〈지분율〉 피상속인 및 조합원 합산 25% 이상
	상속인	• 2년내 가업종사 및 대표자 취임	제한없음
가업상속 공제금액	〈공제금액〉 100% 〈한도〉 • 200억 원(10년 이상), 300억 원(15년 이상), 500억 원(20년 이상)	〈공제금액〉 85% or 100% 〈한도〉 없음	〈공제금액〉 85% or 100% -2,600만 유로부터 75만 유로 당 공제율 1%p 감소
사후 관리	〈사후관리기간〉 10년 • 가업유지 -대표자 유지, 휴·폐업 금지, 업종유지(소분류 내 변경허용) • 가업자산 20% 이상 처분금지 • 지분유지 • 고용유지: 매년 80% + 10년 평균고용 100%(중견 120%)	〈사후관리기간〉 5년(85% 공제), 7년(100% 공제) • 가업유지(휴·폐업 금지) • 가업재산 유지(처분비율 추정) • 지분 및 자본유지 ^{주)} • 고용유지 -85% 공제: 5년 급여 400% -100% 공제: 7년 급여 700%	좌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독일 상속 및 증여세법(ErbStG) §13 정리

주: 배당 외 출자 자본의 회수(15만 유로 이상) 금지

- 따라서 대기업까지는 아니더라도 중견기업 전체를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으로 하고,²³⁾ 그 필요성 심사를 받고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공제해 주는 것이 일자리 유지 또는 창출이라는 사회적 이익의 실현에 부합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중견기업의 경우 가업상속공제에 대한 반대급부(사회적 이익 실현)가 명확하여야 함

□ 한편, 독일 학계에서는 스웨덴(2004년 폐지)이나 오스트리아(2008년 폐지)와 같이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상속세의 감면조항과 공제 제도를 모두 없애고, 상속에 대해서 낮은 단일세율의 상속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안되어 왔음²⁵⁾

23) 현재 중견기업은 연평균 매출액 3천억 원 이하의 기업만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고 있음

24) Gutachten des Wissenschaftlichen Beirats beim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Die Begünstigung des Unternehmensvermögens in der Erbschaftsteuer, 2012. 01. 33 ff.; Jahresgutachten 2008/09 des Sachverständigenrates zur Begutachtung der gesamtwirtschaftlichen Entwicklung, 227f

IV. 기업상속공제의 개선과제 제언

□ 독일 기업상속공제의 동향과 우리나라 기업상속공제의 입법목적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도 상속기업 및 일자리의 보존이라는 사회적 이익의 실현에 중점을 두고 제도의 적용대상 확대와 고용유지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음

- 국제적 추세로 보아 장기적으로는 높은 상속세율을 유지하는 것보다 낮은 단일세율 또는 상속세 폐지를 고려할 필요도 있음

1. 적용대상의 확대 및 고용유지 요건의 강화

□ 기업상속공제제도가 효율적으로 시행되어 경제성장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그 적용대상을 중견기업 전체까지 확대하고, 그 반대급부로 고용유지 요건을 강화하여야 함

- 좋은 입법목적에도 불구하고 기업상속공제제도는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으며, 일반 국민들에게 부의 대물림 같은 부정적인 인식을 주고 있어 인식 전환이 필요함
 - 기업상속공제제도에 대한 완화 또는 확대 개정안이 해마다 국회에 제출되지만,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통과되지 않거나 크게 수정되어 왔음
 -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려면 제도의 입법목적이 단순히 기업의 존속이 아니라 그에 따른 일자리 유지 또는 창출이라는 사회적 이익의 실현이라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제도의 입법목적이 기업의 존속 및 일자리 유지를 통해 세금감면액 이상을 국가 경제성장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공제대상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보다 확대하는 것이 규모 면에서 더 효과적일 것임

-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기업이라면 기업상속공제의 적용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며, 고용유지 또는 창출 등을 통한 경제활성화 등 반대급부만 전제된다면 가능할 것임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대규모기업에 대한 기업상속공제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함과 동시에 필요성 심사를 그 요건으로 판시하였으므로, 우리나라도 필요성 심사를 통해 전체 중견기업에 기업상속공제를 적용하여야 할 것임

- 2017년 세법개정안의 상속세 납부능력 요건 등으로 필요성 심사를 해서 상속세로 인해 존속이 어려운 중견기업에 한정하여 기업상속공제를 적용한다면 제도의 목적에 부합할 것임

- 다만, 중견기업의 경우 과세형평 측면에서 타당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른 적용대상보다 고용유지 요건을 강화해서 일자리 창출이라는 공공복리를 실현하여야 할 것임

- 세제혜택을 받다면 반대급부인 일자리 유지·창출을 하여야 하며, 특히 중견기업의 기업상속공제는 일자리 창출의 능력과 의지가 있는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임

- 그리고 현행 정규직에 한정되어 있는 '일자리 수' 유지보다는 신축적인 운영이 가능한 독일의 근로자 '급여총액' 유지 요건으로 전환하는 것이 기업경영에 저해되지 않을 것임

- 현행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 100% 유지(중견기업의 경우 120%) 요건²⁵⁾을 '8년간 근로자 급여총액 800% 유지(중견기업의 경우 10년간 1,200%) 요건'으로 중견기업의 경우에만 고용창출의무를 두는 것이 타당함²⁶⁾

25) 매년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이 기준 고용인원의 80% 유지 요건도 있음

26) 독일과 비교하여 현행 우리나라의 고용유지 요건은 엄격함. 독일은 5년간 급여총액 400% 유지(85% 공제) 또는 7년간 급여총액 700% 유지(100% 공제) 하여야 하는 등 공제율에 따라 고용유지 요건이 다른 반면, 우리나라는 독일보다 고용유지 요건을 더 장기간 요구하고 있음

2. 장기적인 개선방향

▣ **중소·중견기업의 활성화 및 대기업으로의 성장이라는 기업 선순환을 위해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는 폐지하여 자본이득세²⁷⁾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함**

○ OECD 국가(총 35개국) 중 상속세를 부과하는 국가는 22개국이며, 상속세가 아닌 다른 소득으로 과세하는 국가가 2개국,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는 국가가 11개국임. 2000년대 들어 7개국이 상속세를 폐지하였음

- 스웨덴의 상속세 폐지(2004년)는 조세회피 유인 감소에 따른 투자 활성화, 가족기업의 경쟁력 향상이라는 경제성장의 유인을 강화하는 조치였음²⁸⁾

○ 우리나라는 상속세 부과 OECD 국가 중 상속세 최고세율이 일본 다음으로 높고(2위), 기업의 경우 주

식 평가 시 최대주주는 30%를 가산하므로,²⁹⁾ 65%의 가장 높은 상속세율을 가지게 되어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주고 있음

○ 매우 적은 세수(2015년 총 세수 중 상속세 0.9%)는 부의 재분배 효과가 의문시되고, 특히 기업자산에 대해 국제적으로 가장 높은 상속세율은 기업경영에 장애 요인이 되는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상속세는 국제적 추세에 부합하도록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27) '사망' 당시 시가에 따라 자신의 자산을 처분한 것으로 간주하여 자본이득을 과세하거나(캐나다),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을 그대로 승계한 후 상속인이 실제로 자산을 처분한 시점에 자본이득을 과세(호주)하는 두가지 방식이 있음

28) 송원근·유진성·허원제·김영신, 「주요국의 상속·증여세 최근 동향 및 시사점」, 한국경제연구원, 2013.11

29) 최대주주가 50% 이상 보유한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63조제3항)

〈표 7〉 OECD의 상속세 과세 현황

구 분	국 가
상속세 부과	일본, 프랑스, 영국, 미국, 스페인, 아일랜드, 벨기에, 스위스, 독일, 칠레, 핀란드, 그리스, 네덜란드, 헝가리, 덴마크,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터키, 폴란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한국
자본이득세 부과 (상속세 폐지 연도)	호주(1979), 캐나다(1971)
상속세 폐지 (상속세 폐지 연도)	이스라엘(1981), 뉴질랜드(1992), 포르투갈(2004), 슬로바키아(2004), 스웨덴(2005), 멕시코(2005), 오스트리아(2008), 노르웨이(2014), 체코(2014), 에스토니아, 라트비아(미시행)

자료: IBFD, 각 국가별 "Individual Taxation," section 6, 2015

〈표 8〉 OECD 주요 국가의 상속세 최고세율 비교

구 분	한국	일본	프랑스	미국	독일	핀란드	그리스	이탈리아	OECD 평균
세율 (%)	50	55	45	40	30	20	10	4	26.6

자료: OECD tax database

keri 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일 2017년 11월 27일 | 발행인 권태신 | 발행처 한국경제연구원 |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FKI타워 46층